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대한 현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계획을 2023. 3. 2. 수립하여 지난 3. 23. ~ 3. 31.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입주민 과반수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5개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사전서류 심사 결과 4개소가 통과하였으며,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해 2개소 이내의 어린이집을 최종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사전서류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 아이마루어린이집은 조암남로 132, 유천동 월배힐스테이트 아파트 내 소재하고, 시설규모 지상1층 건물로 연면적 134㎡, 정원 24명, 연평균 현원 16명, 보육교직원 6명으로 인가일은 2009. 12. 14.입니다.
- 둘, 아이멘토어린이집은 조암로6길 20 관리동 101호, 월성동 월성 푸르지오 아파트 내 소재하고, 시설규모 지상1층 건물로 연면적 178㎡, 정원 35명, 연평균 현원 29명, 보육교직원 10명으로 인가일은 2009. 5. 4.입니다.
- 셋, 용산어린이집은 용산서로 9, 용산동 세광태왕2차타운 아파트 내 소재하고, 시설규모 지상1층 건물로 연면적 114㎡, 정원 26명, 연평균 현원 23명, 보육교직원 7명으로 인가일은 2001. 5. 16.입니다.
- 넷, 하늘꿈채어린이집은 조암남로16길 19, 월성동 월성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내 소재하고, 시설규모 지상1층 건물로 연면적 147㎡, 정원 43명, 연평균 현원 33명, 보육교직원 10명으로 인가일은 2007. 9. 4.입니다.
- 위탁내용은 아동 입소·상담, 보육교직원 인사, 회계, 시설 및 물품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 향후계획으로 2023. 4월 의회동의, 5월중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소 이내 전환 대상시설 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6~9월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7아2
----------	---------

제출일자: 2023. 4. 7

제출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필요성

- 어린이집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지식을 가진 자(단체)가 운영해야 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 하는데 유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라. 위탁시설 현황(2023. 4. 6.현재)

○ 관리동 어린이집

시설명 (민간어린이집)	소재지	규모	정원 (연평균현원)	보육 교직원	원장
아이마루 어린이집	조암남로 132 (대천동, 월배힐스테이트)	134m ² (지상1)	24 (16)	6	이은경
아이멘토 어린이집	조암로6길 20, 관리동 101호 (월성동, 월성푸르지오)	178m ² (지상1)	35 (29)	10	이정미
용산 어린이집	용산서로 9 (용산동, 세광태왕2차타운)	114m ² (지상1)	26 (23)	7	이인숙
하늘꿈채 어린이집	조암남로16길 19 (월성동, 월성코오롱하늘채)	147m ² (지상1)	43 (33)	10	이선정

마. 위탁기간: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
- 지역 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3. 참고사항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계획: 붙임 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2023년도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계획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2023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II 추진방향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전환 중점 추진
- 전환 대상시설의 공개 모집·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

III 일반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기준: 2022. 12. 31. / 단위: 명, 개소)

구 분	전 국	대구시	달서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어린이집 개소 수	30,923	1,139	251	36	189	63	46	221	146	187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예정)	5,563	243	46(2)	12	34	13	12	32	50	44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a)	1,016,975	38,352	9,492	1,230	6,429	2,791	1,790	8,326	5,742	7,280
국공립 이용 아동수(b)	260,900	9,403	1,708	406	1,079	718	341	1,448	1,666	2,037
국공립 이용률 (=b/a*100, %)	25.65	24.52	18.00	33.01	16.78	25.73	19.05	17.39	29.01	27.98

※ 국공립 설치율 대구시 21.3% 대비 달서구 18.3%로 확충이 필요함

IV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업내용: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사업량: 2개소 이내
- 전환조건
 -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자의 공동 신청
 - 10년 이상 무상임대 제공
 - 관련심의 통과(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등)
- 운영방법: 위탁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운영
 -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최초 5년간, 재위탁시 재위탁심사 실시)
- 지원 인센티브
 - 정원의 70% 범위 내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비특별비 지원

지급기준(정원)	39인 이하	49인 이하	50인 이상	비고
지원금액(만원)	450	550	700	연 1회 지급

- 대구시 정책 및 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가능

V 세부추진계획

- 모집대상: 현재 운영중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 신청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등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된 시설
- 대표자와 원장 동일 어린이집
- 평가제(평가인증): 전환계획 공고일 기준 평가결과가 A등급(평가인증 90점 이상), B등급(평가인증 80~90점미만)인 어린이집
- 원장(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친·인척* 근무제한: 국공립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의미(사회복지법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준용)

○ 위탁운영자가 아래 신청제외 대상이 아닌 자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및제20조의 결격사유해당자(미성년자,정신질환자,실형선고자, 마약중독자등)
-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 ▶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처분을 받은 자(수사,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를 인정받은 자
-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자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자
-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
-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 신청 접수

- 신청안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안내
- 접수기간: 2023. 3. 23.(목)~ 3. 31.(금)
- 접수장소: 달서구청 여성가족과(별관 6층)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유의사항: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붙임1) 1부
- 2023년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붙임2) 및 예산서
-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必)
 -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조건(운영자 및 무상임대기간 등)이 명시된 의결서
-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동의한 증빙자료 1부
- 아파트 관리규약준칙 사본, 現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사본
- 어린이집 건축물대장 및 건축도면(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 ※ 현 시설현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인가사항 동일)
- 사전적격심사 관련 증빙자료(붙임3-1 참고)
 - 원장 경력증명서,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2022.12.~2023.2월) 및 급
여이체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평가인증 자료 등
- 위탁체 공통심사(2차심사) 관련 증빙자료: 사전적격심사 통과자에 한함
 - 별첨(2차 심사대상자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목록) 참고
 - ※ 사정에 따라 작성요령 및 목록 변경 시 추가 안내

□ 선정심의

- 추진기간: 2023. 4. ~ 5.
- 심의대상: 국공립 전환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 심사방법: 1차(사전적격심사), 2차(발표심사) ⇒ 보육정책위원회 최종 결정
- 심사절차

① 1차 (사전적격심사)

- 사전심사기준표[붙임3] 70점 이상 시설 중 고득점 순으로 2배수 內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최근 1년 간(2022. 3. ~ 2023. 2.)평균 정원충족률이 높은 순
- ※ 평균 정원충족률: (12개월 현원수의 합/12개월 정원수의 합)×100

② 2차 심사(발표심사)

- 대 상: 1차 심사 통과자
- 심사주체: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 발 표 자: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위탁대상자)
- 발표내용: 전환필요성 및 운영계획 소견 등 PPT발표(5분 이내),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평가

※ PPT자료: 사전적격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심사기준: [붙임4]에 따라 70점이상인자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전환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①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 높은 순

② 어린이집 현원 많은 순

③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이 낮은 순

③ 최종선정: 2차 심사기준 순에 따르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결정

※ 1·2차 심사의 각 항목 점수산정은 공고일 기준(별도 명시한 사항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現 시설물 상태(내부집기 포함)로 무상임대 하는 조건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 심사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무상임대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연장 가능
- 위수탁 기간 중 보조금 지원 기준 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사 업 비

- 소요예산: 240백만원 정도(국비50%, 시비25%, 구비25%)
- 지원내용: 개소당 120정도(리모델링 110, 기자재비 10)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공동주택리 모델링, 402-02

※ 사업비 확정 및 교부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VI

향후 일정

- 국공립 전환 계획 통보(공고) : 2023. 3.
- 신청 접수 : 2023. 3.
- 의회 민간위탁 동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3. 4. ~ 5.
- 위·수탁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비 지원 : 2023. 6. ~ 12.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전문개(홍희주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검토내용	검토결과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은 교육 분야가 강조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어린이집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교육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및 지도·점검, 공통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수준이 확보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교육의 비용 절감 ◦ 위탁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이집의 특성과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가능 ◦ 전문인력 구성과 채용에 유연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두터우며, 실무와 교육 경력이 운영에 투입되기에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자원 활용 적절함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관, 동일 성과 기준 적용으로 각 기관의 달성도에 대한 비교 측정 용의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 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받으므로 총체적인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자가체크 및 모니터링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가 충분하며 확보 가능 ◦ 지역내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 전문가(이진희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비용 고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한편 지속,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과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의 수요-공급 측면(어린이집 폐원 증가)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유보통합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이에 따라 보육 공공성 제고 방안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기회비용 포함)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기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탁월한 보육철학과 성실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보육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 관리의 연계

- 민간위탁 선정 어린이집은 지금까지의 전문적인 보육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수혜 받은 지원을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위탁 어린이집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관리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와 달서구청의 지도를 결합하여 투명한 회계처리, 우수한 보육 환경,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피드백에 기초한 보육의 질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